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계약법」 상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0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계약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1. 「지방계약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통지 기간, 이의신청 통지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	제3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정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u>20일</u>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u>15일</u>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20일</u>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u><신 설></u>	② ----- ----- -----<u>30일</u>----- ----- -----<u>25일</u>----- -----. ③ ----- -----<u>14일</u>----- ----- ----- -----. ④ ----- ----- -----<u>30일</u>-----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일정 규모¹⁾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²⁾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³⁾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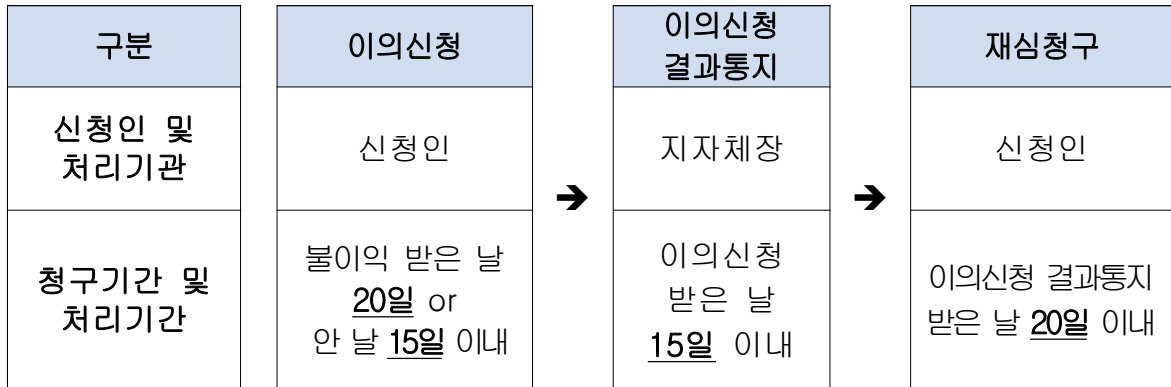
2) 이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

3) 「지방계약법」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심사·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현행법상 이의신청 제도>



그런데,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⁴⁾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불이익을 받은 날 3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안 날 2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4)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있도록 이의신청 제기 가능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을 14일로 단축하며, 결과통지에 대한 재심청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기간	불이익 받은 날 20일 이내 or 불이익 안 날 15일 이내	불이익 받은 날 30일 이내 or 불이익 안 날 25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 15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 14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 14일 이내 (10일 연장 可)
재심청구 기간	이의신청 결과통지 받은 날 2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통지 받은 날 30일 이내	별도 규정 없음

이는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유사하게 「지방계약법」상 이의신청 기간 등을 조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기간 연장(「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단서6))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법」상 이의신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행 「지방계약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의 이의신청 통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의 신청 및 재심청구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6)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202호, 2025.03.20. 발의, 2025.03.21. 기획재정위원회 회부